



“FMD, 힘을 모으고 힘을 내서 막아내자”



대한한돈협회

우편06643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6길 9 제2축산회관 3층 / ☎(02)581-9751/ Fax581-9769 농가지원부

문서번호 한돈협지 제311-3호

시행일자 2023. 4. 14.

수신 임원 및 지부(회)장

참조

선결			지시	
접수	일자		결재·공람	
	시간			
	번호			
	처리과			
	담당자			

제 목 축산법 개정에 따른 한돈농가 냄새저감시설 의무 사항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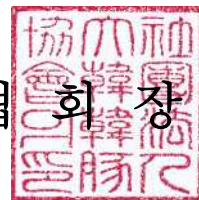
1. 한돈산업을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축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모든 한돈농가에서는 23년 6월 16일 이내에 냄새저감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 축산업 허가 취소까지 가능한 사항입니다.

3. 이에, 본회에서는 회원농가에게 냄새저감시설 정보제공을 위해 E북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여 드리오니 지부(회)에서는 회원 농가에게 해당 사항을 안내하여 축산법에 따른 냄새저감시설등을 설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악취저감 설비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협회로 문의(김하제 과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냄새저감시설 관련 정보 안내 1부. 끝.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장



냄새저감시설 관련 정보 안내

- 2023. 04. 대한한돈협회 -

E북은 환경부 악취관리 업무 편람(2007. 02) 등을 참조하여 작성한 내용이며, 일부 조정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관계법령

○ 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

<p>악취저감 장비·시설</p>	<p>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비 또는 시설을 갖추는 것</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속된 액비를 임시분뇨보관시설에 있는 분뇨와 교체·순환시키는 방법으로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 (2) 음수의 성분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분뇨에서 나오는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 (3) 악취물질을 연소·흡수·흡착·응축·세정·산화·환원 또는 분해하는 방법으로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 (4)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 녹색기술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
-------------------	--

2. E북 이용방법

○ 홈페이지 열람 방법

The screenshots illustrate the following steps to access the E-book:

- Homepage: Click on '회원 서비스' (Member Service).
- Member Service Page: Click on '악취저감 장비·시설' (Odor Reduction Equipment/Facilities).
- Facilities Page: Click on the '악취저감 장비·시설 E-book' link.
- E-book Page: The table of contents is displayed, listing various topics such as '액비순환시설' (Liquid Fertilizer Circulation Facilities), '악취관리 (악취관리시설)' (Odor Management (Odor Management Facilities)), and '악취관리 (악취관리시설)' (Odor Management (Odor Management Facilities)).

홈페이지 내 열람방법

